

# 형사배심 평의에서의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 : 한국 최초의 시민배심 모의재판의 평의에 대한 내용분석

박광배

충북대학교

김상준

대법원

이은로

충북대학교

서혜선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모의형사배심재판에서 평의초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소수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이 결국 최종평결에서 다수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 소수파 배심원들이 다수파 배심원들의 의견에 동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평의과정에 의해 개인적 판단에 내용적 변화가 생겨서 다수의견으로 전향하였기 때문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 파악을 위하여 평의과정을 5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향가(valence)를 가지는 발언과 불리한 지향가를 가지는 발언의 정도가 변화하는 추세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평의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견을 가졌던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의 발언들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들의 비율이 평의진행에 따라 J-자형 추세로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평의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견을 가졌던 초기다수파 배심원들의 발언들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들의 비율이 평의진행에 따라 U-자형 추세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이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을 강하게 암시하였다. 첫째,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견을 가졌던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이 평의초기에는 여전히 유죄심증을 견지하고 있지만, 평의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초기다수파 배심원들의 설득적 논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유죄심증에 합리적 의심이 형성되어 무죄의견으로 생각이 변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초기다수파 배심원들이 소수파 배심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맹목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소수파 배심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자신들의 의견과 비교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최초의 모의형사배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시민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하여 협상 메카니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한 것이 아니고, 토의를 통한 합리적이고 진지한 사실판단과정을 거쳐서 평결을 도출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모의재판, 시민배심, 평의, 사회적 동조, 인지적 전향, 발언 지향가 내용분석

한국에서는 1단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배심재판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약 100~200 건 정도의 중죄 형사사건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시작

박광배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김상준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은로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서혜선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자자 : 박광배,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43) 261-2195,  
E-mail : kwangbai@chungbuk.ac.kr

한다. 그리고 1 단계 시행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 적합한 완성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사법개혁위원회 2004). 이런 제도적 개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2004년 8월 26일 한국에서는 최초로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법원의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역 법조인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존재하였던 형사재판사건에 기초한 모의형사배심재판을 실시하였다. 대법원이 모의형사배심재판을 실시한 목적 중의 하나는 “배심재판 경험이 전혀 없는 한국의 평균적인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배심평의를 거쳐서 타당한 평결을 도출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본 연구는 실제 형사배심재판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의재판의 평의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문의 한 가지 구체화된 세부내용인 “배심원 개개인들이 소신과 양심에 의해 판단하였는가?” 혹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이 진정으로 배심원 개개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미국에서의 연구들에 의하면, 거의 모든 배심재판에서 평의가 개시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배심원들이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의 모든 배심재판에서 평의가 끝난 후에는 만장일치에 의하여 최종평결이 도출된다 (Jury Research Institute, 2001; Hannaford-Agor, Hans, Mott, & Munsterman, 2003). Kaplan(1987, 1989)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된 정상적인 배심평의에서 배심원들이 자신의 초기판단과 반대되는 판단에 동의하여 결국 만장일치에 합의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다른 배심원들과의 평의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초기의견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초기의견의 타당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서 초기의견이 평의과정에서 실제로 바뀌어서 결국 다수의견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일종의 전향(conversion)이다. 소수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에 합의하는 두 번째 이유는 평의 초기에 가졌던 자신의 의견에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을 가진 다른 배심원들의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친화동기 등의 사회적 이유들로 인하여 다수의견에 합의하는 일종의 동조(conformity)이

다. Kaplan은 전향의 경우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과업목표(task goal)’에 배심원들의 평의가 집중되고 서로 경쟁하는 의견들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의견에 대하여 ‘정보적 영향력(informational influence)’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것인 반면에, 동조의 경우는 만장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집단목표(group goal)’에 배심원들의 평의가 집중되고 서로 경쟁하는 의견들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의견에 대하여 ‘규범적 영향력(normative influence)’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배심원이 자신의 소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동료배심원들로부터의 압력 혹은 친화동기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자신의 실제 의견에 반한 판단에 동조하는 것은 사실 판단 혹은 ‘사실인정(fact-finding)’을 해야 하는 재판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Kessler, 1973). 다수의 판단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동조현상으로 배심평결이 이뤄진다면 배심제도의 사회적, 사법적 유용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의 경우, 배심평의 과정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단순한 동조나 사회적 압력 또는 협상 메카니즘에 의해 평결이 이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모의형사배심재판에서 평의 초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소수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이 결국 최종평결에서 다수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 소수파 배심원들이 다수파 배심원들의 의견에 동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평의과정에 의해 개인적 판단에 내용적 변화가 생겨서 다수의견으로 전향하였기 때문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동조와 전향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만장일치가 소수파 배심원들의 사회적 동조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인지적 전향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평의과정에서 나온 배심원들의 발언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후, 모의형사배심재판에서의 평의를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 한국에서의 국민사법참여 제도에 대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의 이론적 구별

동조는 판단의 내용이 사회적 정의(definitions), 혹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실체 인정이고, 개인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판단기준이 부족하여 개인이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자신의 개인적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집단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Sherif, 1936; Deutsch & Gerald, 1955). 이러한 유형의 동조를 ‘정보적 동조(informational conformity)’라고 지칭할 수 있다. 즉, 집단이 자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단의 판단을 수용하는 현상이다. 동조의 또 다른 유형은 집단에 의해 가해질 수 있는 보상이나 처벌 등의 규범적 압력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집단의 판단이 명백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집단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Ash, 1956). 자신의 판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집단의 판단을 수용하는 이유는 집단의 다른 성원들과 같이 행동함으로써 집단성원으로써 수용되고 인정을 받으려 하며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이단자로서 취급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동조를 ‘사회적 동조(social conformity)’라고 지칭할 수 있다. 개인의 심중에 내재하는 개인적 판단 자체에는 내용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채, 개인이 집단의 판단에 동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동조에 대한 사회심리학의 전통적인 정의에 기초하여, 배심평결과 같은 집단판단 상황에서 배심원의 심중에 있는 실제 의견이 배심단내에서의 소수의견이고 최종평결을 위하여 행동으로 표명한 의견이 배심단내에서의 다수의견이면 그 표명된 의견을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동조의 개념에 관한 이 정의는 동조를 각각 과정이나 정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판단과정 혹은 판단의 출력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개인의 판단과 집단의 판단 혹은 소수파의 판단과 다수파의 판단이 서로 상충할 때, 설득과정을 통하여 소수파의 판단에 내용적 변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소수파가 다수파의 판단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충하는 판단들의 내용에 관해서 주장과 반대주장들이 제기되고, 그 주장들의 강점과 약점이 대비되며, 각기 상충하는 판단들의 가능한 결과들이 예상되고, 연역적인 논리와 귀납적인 논리가 제시되는 등의 심층적인 정보처리과정이

수반된다(Nemeth & Kwan, 1987; Alvaro & Crano, 1997; Peterson & Nemeth, 1996; Martin & Hewstone, 2001; Baron & Kerr, 2003). 따라서 토론을 통한 집단역학과정에서 전향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집단의 판단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단이 개인의 판단을 수용하거나 다수파가 소수파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Moscovici & Lage, 1976; Moscovici, 1980; Moscovici, Mucchi-Faina & Maass, 1994). 집단역학과정에서의 심층적인 정보처리과정에 의해 의견이나 판단에 내용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적 전향(cognitive conversion)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배심평의 상황에서 비록 최종평결 시에 표명된 의견이 평의 초기의 의견과 다르지만, 최종평결 시에 배심원의 심중에 있는 개인적 의견도 배심단내에서의 다수의견이고 행동으로 표명된 의견도 다수의견이면 그 표명된 의견은 인지적 전향에 의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하여 초기의견이 유죄였던 배심원이 평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무죄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와, 초기의견이 무죄였던 사람이 최종평결에서 유죄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서 그러한 의견의 변화가 사회적 동조인지, 인지적 전향인지의 여부는 유무죄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다.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기준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심중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의 이 유무죄 판단기준을 “합리적 의심의 부재(BRD : *Beyond Reasonable Doubt*)”라고 부른다. 합리적 의심이란 이성적인 의심이며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의심을 의미하며, 느낌이나 추측에 의한 의심이어서는 안 된다(Tanford, 1990).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자인 배심원들의 심중에 피고인이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초기의견이 유죄였던 배심원이 자신의 초기의견에 대하여 평의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최종평결에서 피고인의 무죄에 대한 확신이 없이 무죄평결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동의를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초기의견이 무죄였던 배심원의 경우에는 그 초기의견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유죄확신으로 바뀌지 않은 한, 유죄평결에 동의하

는 것은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의에서 최종평결 시에 표명된 의견이 초기의견과 달라지는 경우, 그것이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적 전향에 의한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판단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된다. 평의초기의 유죄의견 표명이 최종평결에서 무죄의견(만장일치 의견) 표명으로 바뀌는 의견표명변화의 경우에는 심중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면 인지적 전향이 되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동조가 된다. 반면에 평의초기의 무죄의견 표명이 최종평결에서 유죄의견(만장일치 의견) 표명으로 바뀌는 의견표명변화의 경우에는 심중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면 사회적 동조가 되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지적 전향이 된다.

####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의 객관적 구별

분석적인 관점에서 만장일치가 소수파 배심원들의 사회적 동조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인지적 전향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심원의 심중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의과정에서 개인 배심원이 행한 발언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한 토의 과정에서 판사들이나 배심원들이 행하는 발언들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단을 지향하는 것인지, 유죄판단을 지향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최종판결이 결정 혹은 예측되는 경우가 많다(Tanford & Penrod, 1990-Arce, Tortosa & Alfaro, 2004에서 재인용 Hoffman & Klein, 1994). 또한 합의부 판사단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단의 논의 내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판사들의 논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결정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배심단들의 논의에서는 유죄지지와 무죄지지의 암시를 가지는 발언들이 중립적 발언들보다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Arce, Tortosa & Alfaro, 2004). 평의과정에서의 배심원의 각 발언에 합축된 유죄의견 혹은 무죄의견의 취지를 “지향가(valence)”로 지칭할 수 있다. 지향가는 원래 양자물리학에서 원자가 양전기를 가지는 것인지, 음전기를 가지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원자가라는 용어를 번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수소원자의 원자가를 1로 하면 산소와 염소의 원자가는 각각 2, 1이다. 배심원의 각 발언은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단을 지향하는 발언인지, 유죄판단을 지향하는 발언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발언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 많이 주저하는 것 같았다.”와 같은 발언은 무죄판단을 지향하는 발언 혹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지향하는 발언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피고인의 옷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그 사이에 세탁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와 같은 발언은 유죄판단을 지향하는 발언 혹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지향하는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범인이 사람들 속에 섞여서 도망하려고 주택가 쪽으로 뛰어간 것이다.”와 같은 발언은 단순히 범인의 행동에 관한 해석이며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유무죄와는 상관없는 혹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발언이다.

전체 평의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향가를 가지는 발언과 불리한 지향가를 가지는 발언의 정도가 변화하는 추세와 더불어 그 두 종류의 발언들의 상호간 정도차이를 비교분석하면 본인의 초기의견과 다른 최종평결에 합의한 배심원들이 사회적 동조에 의해 의견표명을 바꾼 것인지, 전향에 의해 의견표명을 바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가능하다.

우선 소수파 배심원들의 동조에 의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것이 인지적 전향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향가의 변화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초한다. 만장일치에 의해 피고인의 무죄를 평결한 배심원단에서 평의초기에 유죄의견을 표명하였던 배심원이 사회적 동조에 의하여 무죄평결에 합의한 것이라면 그 배심원의 평의과정 중 발언들은 대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지향가를 시종일관 많이 함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유죄의견을 표명하였던 배심원이 인지적 전향에 의하여 무죄평결에 합의한 것이라면 그 배심원의 발언들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지향가를 가진 것들이 평의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향가를 가진 것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

이다. 따라서, 평의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견(소수의견)을 가지고 있던 배심원이 다수파 배심원들의 주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평의과정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는데, 최종평결에서는 무죄취지의 만장일치에 합의하였다면, 그 배심원의 최종판단(무죄)은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평의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견을 가지고 있던 배심원이 평의초기에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많이 개진하였으나, 다른 배심원들과의 토론과 의견교환이 진행되면서 그 배심원의 빌언내용이 점진적으로 무죄주장으로 변모해가다가 최종평결에서 무죄취지의 만장일치에 합의하였다면, 그 배심원의 최종판단(무죄)은 인지적 전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초기의견과 다른 최종평결에 합의한 배심원들이 사회적 동조에 의해 의견표명을 바꾼 것인지, 인지적 전향에 의해 의견표명을 바꾼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빌언지향가의 평의시기별 변화추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최종평결 직전시기에 이루어진 빌언들의 지향가 분포이다. 예를 들어, 만장일치로 무죄가 평결된 배심원단에서 평의초기에 유죄의견을 표명하고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빌언들만 하던 배심원이 평의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빌언을 점차로 많이 하는 변화추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 평의시기에 그 배심원이 행한 빌언 중 40%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빌언이고 나머지 60%는 불리한 빌언이었다고 가정하면 그때에도 그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무죄평결에 동참한 것을 인지적 전향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서 설명한 BRD 기준을 고려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초기의견이 유죄였던 배심원이 자신의 초기의견에 대하여 평의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최종평결에서 피고인의 무죄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무죄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평의시기에 그 배심원의 빌언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빌언이 유리한 빌언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죄평결에 동의한 것을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초기의견이 무죄였던 배심원의 경우에는 그 초기의견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유죄확신으로 바뀌지 않은 한, 유죄평결에 동의하는 것은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이 되므로 가장 마지-

막 평의시기에 그 배심원의 빌언 중 거의 전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빌언이 아닌 한 최종적으로 유죄평결에 동의하는 것은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빌언의 지향가를 분석하여 소수파 배심원들의 사회적 동조에 의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인지적 전향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리를 배심원단의 평결이 무죄인 경우와 유죄인 경우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이루어진 재판에서 평의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견을 가졌던 배심원의 빌언들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빌언들의 비율이 평의진행에 따라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 가장 마지막 평의시기에서의 빌언지향가의 분포(피고인에게 유리한 빌언과 불리한 빌언의 상대적 정도)에 상관없이 그 배심원은 인지적 전향에 의해 최종평결에서 무죄평결에 찬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빌언들의 비율이 평의진행에 따라 일정하게 낮고, 가장 마지막 평의시기에서도 여전히 낮으면 그 배심원은 사회적 동조에 의해 최종평결에서 무죄평결에 찬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이루어진 재판에서 평의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견을 가졌던 배심원의 빌언들 중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빌언들의 비율이 평의진행에 따라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가장 마지막 평의시기에서의 빌언이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빌언이면 그 배심원은 인지적 전향에 의해 최종평결에서 유죄평결에 찬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빌언들의 비율이 평의진행에 따라 일정하게 낮고, 가장 마지막 평의시기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빌언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배심원은 사회적 동조에 의해 최종평결에서 유죄평결에 찬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심재판에서 배심평의과정 중에 배심원들 사이에서 사회적 동조나 인지적 전향이 한번 혹은 여러 번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종평결에서 피고인의 무죄 혹은 유죄를 표명하는 배심원들의 행동이 사회적 동조냐, 아니면 인지적 전향이냐를 파악하기 위한 것 즉, 최종평결이 각 개인 배심원들의 합리적이고 진정한 판단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평의과정에서 인지적 전향이나 사회적 동조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혹은 그것이 부침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평의과정에서 어떤 배심원에게 처음에는 사회적 동조가 발생하고 그것에 의하여 인지적 전향이 뒤따라 발생하며, 그 배심원이 결국 인지적 전향에 의하여 평결에서 다수의견을 표명한다면, 평의과정에서 사회적 동조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며,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최종 평결이 결국 인지적 전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방 법

### 범죄 시나리오

모의재판을 위한 범죄 시나리오는 실제 범죄사건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데, 20대 남자 범인, 40대 여자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딸이자 목격자인 20대 여자가 등장한다. 공원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20대 남자가 40대 여성의 돈을 훔치고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사건 당시,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딸은,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 화장실로 들어가던 중 화장실 문 앞에서 달아나던 범인과 마주하게 된다. 범인은 피해자의 딸에게 '여기는 남자화장실이니 반대쪽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딸은 어머니가 분명 이곳으로 들어갔다면 안으로 들어가기를 고집하였다. 범인은 달아났고, 피해자의 딸은 화장실 안에서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였다. 딸은 큰소리로 범인이 달아난다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공원관리인이 그 범인을 뒤쫓아 갔지만 인근 주택가에서 놓쳤다. 며칠 후, 경찰은 그 주택가에서 공원관리인이 묘사했던 범인과 외모가 비슷하고, 피해자의 딸이 진술했던 것과 똑같은 색깔의 추리닝을 입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여 체포하였다. 피해자의 딸은 경찰에서 이루어진 범인지목(라인업) 과정에서 그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 모의재판

한국에는 배심재판을 위해 설계된 법정이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법원의 실제 법정 중의 하나를 미국식 구조로 개

조하여 모의재판이 이루어졌다. 모의재판에서는 현역 변호사들이 판사, 변호인,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모의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시민들은 서울중앙법원이 소재한 지역에 살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모의재판 참여를 희망한 36명이었으며, 세 배심단에 각각 12명씩 할당되었다. 한 배심단(A)이 법정에 마련된 배심원석에 앉아서 재판을 관람하였고, 다른 두 배심단(B, C)은 방청석 면 앞줄에 앉아서 재판을 관람하였다.

재판은 배심원들이 선서를 하고, 변호인과 검사가 각각 모두별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피해자의 딸이 범인을 목격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피고인의 바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도구(칼)도 찾지 못했다. 피해자 딸을 비롯하여, 범인을 뒤쫓아 간 공원관리인, 사건 직후 피고인과 당구게임을 하였다고 증언한 피고인의 친구, 당구장 주인, 피고인을 체포하고 피해자 딸과 함께 범인지목절차를 수행한 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선서를 하고 증언하였다. 재판 중 경찰이 범인지목절차를 통해 딸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보여주었다. 피고인의 친구는 범행이 발생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피고인과 당구를 쳤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짧은 시간에 범죄현장에서 그 당구장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모의재판은 약 3시간가량 진행되었고, 재판절차가 종료된 후에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배심평의를 위한 지침(instruction)을 설시하였다.

### 평의

각 배심단은 분리된 방에서 평의를 진행하였다. 평의를 위한 제한시간은 없었고, 모든 평의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평의가 녹화된 테이프의 음성자료는 나중에 분석을 위하여 글로 채록되었다.

각 배심단은 평의를 하기에 앞서 의장(fore-person)을 선출하였는데, 배심단 A의 의장은 37세 회사원으로 대학교육과정을 마친 남성이었고, 배심단 B의 의장은 대학교육을 마친 64세의 퇴직한 남성이었으며, 배심단 C의 의장은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63세의 퇴직한 남성이었다. 배심원들은 서로의 직업이나 교육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의를 진행하였다. 평의초기에는 초기투

표에서 총 36명의 배심원들 중에서 6명이 유죄의견을 표명하였고, 3명이 불확정이었고, 나머지 배심원들은 무죄의견을 표명하였다. 배심단 A와 C는 약 90분 동안 평의를 하였고, 배심단 B는 평의를 위하여 약 60분이 소요되었다. 세 배심단 모두 최종적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다 초기의견표명을 보류하였던 3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이 평의 후의 최종평결에서 자신의 초기판단을 무죄로 바꾸었는데, 미국에서 이루어진 배심연구들에서 평균적으로 약 30% 가량의 배심원들이 평의과정을 통하여 초기의견을 바꾼다는 결과(Heuer & Penrod, 198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결과

### 분석단위

본 연구에서의 분석단위(analysis unit)는 ‘발언(utterance)’이다. 발언이란 대화 혹은 전술의 기본적 구성단위 중의 하나를 일컫는 개념인데(Bakhtin, 1981, 1986), 음성학적으로 앞과 뒤에 짧거나 긴 침묵(silence)으로 둘러싸인 말의 단위를 말한다. 즉, 말의 의미내용이 바뀌는 각각의 전환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발언은 항상 앞선 발언에 대한 대답이거나 앞선 발언에 의해 조건 지워지거나 혹은 앞의 발언을 한정하는(qualifies) 역할을 한다(Holquist, 1990). 문자로 채록된 형태에서 발언은 대개 하나의 단문(sentence) 혹은 독립적인 구절(clause)에 해당된다. 구절이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의미내용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군집인데, 때로 주어가 표현되지 않고 함축되어 있으면 한 경우도 있다. 구절의 다른 정의는 주어와 술어를 가지며 연합문이나 복문(compound or complex sentence)의 부분을 이루는 단어 군집이라는 것이다. 구절은 쉼표나 상응하는 접속사 또는 접속사 없이 쌍반점(semicolon)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친구도 이랬다 저랬다 번복했고, 당구장 주인도 번복했다”와 같은 말은 두 개의 발언으로 다루어졌다.

### 초기의견 분포

표 1은 세 배심단원의 연령, 성별과 함께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초기의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배심단 A

표 1. 배심원들의 연령, 성별, 평의전 의견 분포

배심단	연령 평균 (표준편차)	성별 여성비율	초기 의견		
			유죄	무죄	판단보류
A	38.25 (14.07)	42%	2	8	2
B	51.08 (13.21)	42%	2	9	1
C	57.08 (13.11)	33%	2	10	0
전체	49.03 (15.32)	39%	6	27	3

의 배심원들은 다른 배심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배심단 C는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다. 평의초기에 무죄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배심단 C는 초기의견에서 불확정이 없이 전원 모두 무죄의견을 표명하였다.

### 배심원들의 평의참여 분포

배심원들의 각 발언에 대하여 시간(초 단위)을 측정하였고, 그 시간을 각 배심원의 발언들에 대하여 합산해서 각 배심원이 발언한 총 시간을 산출하였다. 개인배심원 별로 산출된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의 분포를 산출한 결과, 정적으로 편포된 분포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각 배심원단에서 한두 명의 배심원들이 다른 배심원들보다 발언을 특별히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하는 경향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표 2는 배심원들의 평의참여분포를 보여준다. 각 배심원들은 평균적으로 약 400초 동안 30~40번 발언하였다. 각 배심단내에서 배심원들 사이에 발언횟수나 그 길이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지만, 배심단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배심원들의 평의참여 분포

배심단	발언 횟수			발언 시간 <sup>1</sup>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A	39.08 (36.34)	4	112	451.28 (397.42)	35.5	1208.5
B	39.33 (31.76)	2	117	346.04 (294.01)	19.5	1080.0
C	35.25 (32.65)	2	115	461.67 (419.74)	21.0	1507.0

1. 단위: 초

각 배심단에서 발언의 빈도가 가장 많고 발언시간이 가장 길었던 배심원을 세 명씩 뽑아서 그들의 초기의견을 파악하였다. 배심단 A에서는 세 명중 2 명의 초기의견이 ‘무죄’였고, 1 명의 초기의견이 ‘판단보류’였고, 배심단 B에서는 세 명중 2 명의 초기의견이 ‘유죄’였고, 1 명의 초기의견이 ‘무죄’였으며, 배심단 C에서는 세 명중 2 명의 초기의견이 ‘유죄’였고, 1 명의 초기의견이 ‘무죄’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의초기에 소수의견(유죄)을 가졌던 배심원들의 평의참여가 특별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대다수는 소속 배심단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왕성하게 평의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 발언주제 분포

주제(subject)는 토론자들이 대화를 이어가는 포괄적 맥락(frame of reference)을 규정하는 의미내용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발언의 주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평결주제이고, 둘째는 절차주제이며, 셋째는 사교주제이다. 평결주제는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직간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주장, 진술, 추정, 의문 등을 내포하는 발언의 주제를 의미한다. 절차주제는 배심단 대표의 선출, 발언순서의 결정, 초기 의견을 먼저 표명한 후에 평의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 등과 같이 평의를 진행하는 절차와 방식에 관한 발언의 주제를 의미한다. 사교주제는 배심원들 사이의 라포를 형성하거나 편안한 평의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자기소개, 날씨에 대한 언급, 법정에 와본 소감 등 재판이나 평결과 무관한 사교적 발언의 주제를 의미한다. 그밖에 평결과 무관하고, 근거 없는 막연한 연상에 기초한 발언이나 질문들은 세 가지 발언주제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자유연상’ 범주로 코딩

하였다. 자유연상 발언의 예를 들자면 “범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등이다. 각 발언의 주제를 구분하는 이유는 평결주제에 의한 발언들만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분석대상이기 때문이다.

세 개의 배심단에서 이루어진 총 1344개의 발언들에 대한 주제분류에서의 평가자간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명의 평가자가 ‘자유연상’을 포함한 4 가지의 주제 유형에 대한 정의를 숙지하고, 180개의 발언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각 발언들을 4 가지의 주제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 Cohen의 kappa를 산출하였다. 각 평가자가 분류한 네 가지 주제유형에 대하여 우연에 의한 분류일치를 제외한 kappa를 산출한 결과 0.89가 산출되었고, 각 평가자가 분류한 주제유형을 평결주제와 기타주제(절차주제, 사교주제, 자유연상)로 이분화하여 우연에 의한 분류일치를 제외한 kappa를 산출한 결과 역시 0.89가 산출되었다. 우연에 의한 일치를 제외한 후의 평가자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Cohen의 kappa는 ‘우연에 의한 일치’에 대하여 보수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까닭에 매우 보수적인 일치도 지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Fleiss(1981)는 0.75 이상의 kappa는 “강한 일치도(strong agreement)”를 의미하고, 0.40에서 0.75 사이의 kappa는 “좋은 일치도(fair to good agreement)”를 의미하며, 0.40보다 작은 kappa는 “열등한 일치도(poor agreement)”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andis & Koch(1977)는 우연에 의한 일치를 제외한 후의 0.81 이상의 kappa는 “완벽한 일치(perfect agreement)”를 의미하고, 0.61에서 0.81 사이의 kappa는 “대단한 일치(substantial agreement)”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기준을 적용하면 본 연구에서 발언주제에 대한 분류에서 산출된 kappa의 값 0.89는 최소한 거의 완벽한 평가자간 일치도를 나타낸다.

표 3. 발언주제별 시간분포

배심단	평 결 주 제	절 차 주 제	사 교 주 제	자 유 연 상	전 체
A	67'20" (74.6%)	15'23" (17.0%)	06'10" ( 6.8%)	01'23" (1.5%)	90'16" (100%)
B	55'51" (85.9%)	04'56" ( 7.6%)	02'04" ( 3.2%)	02'13" (3.4%)	65'03" (100%)
C	60'21" (65.4%)	19'09" (20.7%)	11'22" (12.3%)	01'28" (1.6%)	92'20" (100%)
평 균	61'11" (74.1%)	13'09" (15.9%)	06'32" ( 7.9%)	01'41" (2.0%)	82'33" (100%)

발언주제별 시간분포가 표 3에 요약되었다. 배심원들은 평결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대부분의 평의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배심단 A는 전체 평의시간의 76.4%(90분 중 약 67분)를, 배심단 B는 전체 평의시간의 85.9%(65분 중 약 56분)를, 배심단 C는 전체 평의시간의 65.4%(92분 중 약 60분)를 평결주제로 논의하는데 사용하였다. 평결주제에 관련된 발언과 절차주제에 관련된 발언의 시간을 합산하면 한국 배심원들이 평의시간을 평결을 위하여 집약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평의에서 이루어진 발언들을 주제별로 빈도를 제시한 것이다. 발언주제별 빈도분포는 앞서 표 3에 제시된 발언주제별 시간분포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심단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발언들이 평결과 평의절차를 위한 본질적인 논의에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결주제로 분류된 발언은 다시 31개의 세부논제로 분류되었다. 세부논제란 ‘알리바이목격자’, ‘경찰관행동’, ‘범행동기’와 같이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부논제에 관한 자료의 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논문을 통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 발언의 지향가 분포

배심원의 각 발언은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단을 지향하는 발언인지, 유죄판단을 지향하는 발언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발언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었다. 예를 들어, “운동화와 현금이 증거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와 같은 진술은 무죄를 주장하는 배심원이 유죄를 주장하는 배심원들에게 증거물을 재확인한 것으로 무죄지지 지향자를 가진 발언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12번

배심원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피의자의 딸 중언밖에 없나요?”라는 질문은 유죄지지의 근거를 확인하여 무죄지지로 설득하려는 진술이므로 무죄지지 지향자를 가진 발언으로 분류하였다. 피해자 딸의 목격증언에 대하여 기억력의 한계를 주장하고 나서 “몽타주를 그린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발언은 제시된 몽타주의 증거력을 회의하는 것으로 무죄지지의 지향자를 가진 발언으로 분류하였다. 반면에 “사건발생 20분 후에 피고인과 친구가 당구장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20분이면 사건 현장에서 당구장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한 발언은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무효화시키는 유죄지지의 지향자를 가진 발언이다. 또한 “목격자가 라인업에서 망설인 것은 혼동되어서가 아니고 신중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발언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유죄지지 발언이다.

이와 같이 평결주제에 대한 배심원의 각 발언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단을 지향하는 발언인지, 유죄판단을 지향하는 발언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발언인지의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들을 가능한 자세히 세분화하고, 발언 지향자의 구분을 위한 그 기준들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자간 일치도를 검증하였다. 앞서 발언주제의 구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무작위로 추출된 180개의 발언들에 대하여 두 명의 평가자가 공히 평결주제로 평가한 115개의 발언들을 다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단을 지향하는 발언인지, 유죄판단을 지향하는 발언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발언인지의 여부에 따라 세 가지의 지향가 범주로 분류하였다. 각 평가자가 분류한 세 가지 지향가 범주에 대하여 우연에 의한 분류일치를 제외한 kappa를 산출한 결과 0.79가 산출되었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된 발언을 제외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단을 지향

표 4. 주제별 발언빈도 분포

배심단	평결주제	절차주제	사교주제	자유연상	전체
A	306 (65.2%)	122 (26.0%)	28 ( 6.0%)	13 ( 2.8%)	469 (100%)
B	360 (79.6%)	59 (13.1%)	14 ( 3.1%)	19 ( 4.2%)	452 (100%)
C	251 (59.3%)	112 (26.5%)	51 (12.1%)	9 ( 2.1%)	423 (100%)
평균	305.7 (68.2%)	97.7 (21.8%)	31.0 ( 6.9%)	13.7 ( 3.1%)	448.0 (100%)

표 5. 배심원들의 초기의견과 평의시기별 발언지향가의 빈도와 비율 분포

초기의견	평의시기	지향가			전체
		중립	불리	유리	
무죄(n=27)	1기	10 (8.3%)	3 (2.5%)	107 (89.2%)	120 (100%)
	2기	13 (13.1%)	15 (15.2%)	71 (71.7%)	99 (100%)
	3기	13 (13.8%)	21 (22.3%)	60 (63.8%)	94 (100%)
	4기	17 (10.9%)	24 (15.4%)	115 (73.7%)	156 (100%)
	5기	8 (8.2%)	11 (11.3%)	78 (80.4%)	97 (100%)
	전체	61 (10.8%)	74 (13.1%)	431 (76.1%)	566 (100%)
유죄+불확정(n=9)	1기	10 (21.3%)	32 (68.1%)	5 (10.6%)	47 (100%)
	2기	7 (6.8%)	68 (66.0%)	28 (27.2%)	103 (100%)
	3기	5 (7.2%)	54 (78.3%)	10 (14.5%)	69 (100%)
	4기	7 (6.2%)	73 (64.6%)	33 (29.2%)	113 (100%)
	5기	5 (8.3%)	30 (50.0%)	25 (41.7%)	60 (100%)
	전체	34 (8.7%)	257 (65.6%)	101 (25.8%)	392 (100%)
전체(n=36)		95 (9.9%)	331 (34.6%)	532 (55.5%)	958 (100%)

하는 발언이라고 평가된 것과 유죄판단을 지향하는 발언이라고 평가된 92개의 평결주제 발언들에 대한 kappa를 산출한 결과 0.84 가 산출되었다. 앞서 발언주제의 분류와 관련하여 설명한 Fleiss(1981)와 Landis & Koch (1977)의 기준에 의해 판단하면 본 연구에서 평결주제 발언의 지향가 분류에서 산출된 kappa의 값은 거의 완벽하거나 최소한 매우 우수한 평가자간 일치도를 나타낸다.

발언지향가의 변화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평의 시간을 5등분하여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평의시기를 5등분한 이유는 분할된 평의시기가 많으면 각 시기 내의 발언의 수가 작아지므로 비율 등의 통계치들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것이 너무 적으면 발언내용의 변화추세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섯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평의시간을 5등분하여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 평의시기에서 초기의견이 무죄였던 배심원들과 초기의견이 유죄 혹은 불확정이었던 배심원들이 행한 평결주제 발언들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향가를 가지는 발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지향가를 가지는 발언, 그리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하여 중립적인 발언의 수를 집계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평의초기에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배심원들은 평

의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향가를 가진 발언을 불리한 지향가를 가진 발언들보다 훨씬 많이 하였다(76.1% 대 13.1%). 반면에 평의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혹은 ‘불확정’ 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지향가를 가진 발언을 유리한 지향가를 가진 발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하였다(65.6% 대 25.8%).

그림 1와 그림 2는 표5의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 평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발언들의 내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평의초기에 ‘무죄’ 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향가를 가진 발언의 비율이 처음에는 89.2%였던 것이, 평의 3차 시기에서는 63.8%로 줄어들었다가, 마지막 시기에는 다시 80.4%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이들의 부적 지향가를 가진 발언의 비율은 정반대의 변화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평의 전반에서는 2.5%에서 22.3%로 증가하고, 후반에서는 11.2%로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평의초기에 ‘무죄’ 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n=27) 발언의 지향가가 평의과정에서 변화하는 추세를 보다 염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과 그 밖의 발언(불리+중립)으로 이분화된 발언 지향가를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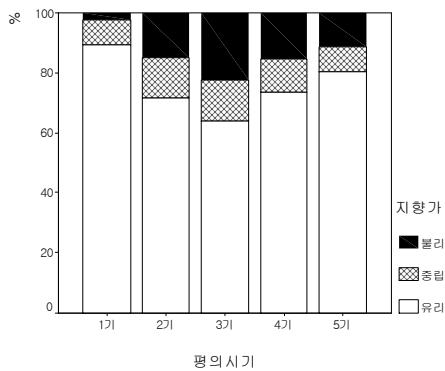


그림 1. 초기의견이 '무죄' 인 배심원들의 평의시기에 따른 발언 지향가의 비율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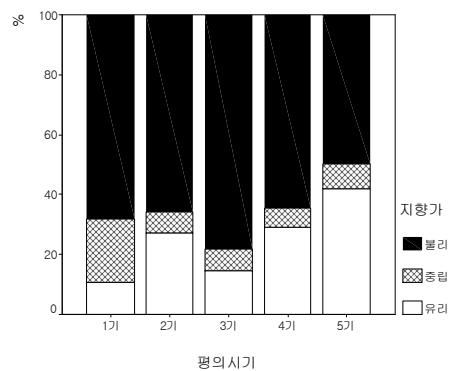


그림 2. 초기의견이 '유죄' 혹은 '불화정'인 배심원들의 평의시기에 따른 발언 지향가의 비율분포

변인으로 가지는 로짓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추세분석(trend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즉, 로짓분석모형의 반응변인은 각 발언의 이분화된 지향가이다. 로짓분석모형의 설명변인은 평의시기와 배심원이었는데, 5개의 범주를 가지는 평의시기는 직선형성분(-2, -1, 0, 1, 2)과 포물선형성분(2, -1, -2, -1, 2)으로 대비코딩되었고, 27명의 배심원은 26개의 참조변인들로 참조코딩(reference coding)되었다. 배심원이 로짓분석모형의 설명변인으로 포함된 이유는 각 평의시기의 발언들이 동일한 배심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따라서 반응변인(발언 지향가)이 평의시기에 걸쳐서 반복측정된 자료이므로 배심원에 따른 변산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여기에서 검증된 모형을 위하여 설명변인인 배심원을 고정요인(fixed factor)으로 간주하였는바, 그것을 무선요인(random factor)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모형에 지정된 직선형성분과 포물선형성분의 확률에 근소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나, 그 성분들에 대한 통계적 결정(유의도 판정)이 바뀌지는 않는다(설명변인을 무선요인으로 간주하는 로짓분석모형은 박광배, 2005의 제 9장과 제 10장을 참고하라). 평의초기에 '무죄' 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이 행한 평결주제 발언들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의 비율이 평의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 중에서 직선형성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Wald  $\chi^2=0.923$ ,  $df=1$ ,  $p=0.337$ ), 포물선형성분은 제 1종 오류확률  $\alpha=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Wald  $\chi^2=17.925$ ,  $df=1$ ,  $p<0.001$ ). 결론적으로, 평의초기에 '무죄' 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의 발언 중에서 피고

인의 무죄를 지지하는 지향가를 가진 발언의 비율은 평의과정에서 분명한 U-자형 추세(quadratic trend)를 가지고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의초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하여 '유죄'와 '불화정'의 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은 평의 과정 동안 피고인의 무죄를 지지하는 지향가를 가진 발언의 비율이 10.6%에서 41.7%까지 점차적으로 상승하였다(그림 2). 반면에 피고인의 유죄를 지지하는 지향가를 갖는 발언의 비율은 68.1%에서 50.0%로 감소하였다. 평의초기에 '유죄' 혹은 '불화정' 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n=9) 발언의 지향가 변화추세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로짓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평의초기에 '유죄' 혹은 '불화정' 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이 행한 평결주제 발언들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의 비율이 평의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 중에서 직선형성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Wald  $\chi^2=9.042$ ,  $df=1$ ,  $p=0.003$ ), 포물선형성분도 제 1종 오류확률  $\alpha=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Wald  $\chi^2=4.194$ ,  $df=1$ ,  $p=0.041$ ). 따라서 평의초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하여 '유죄'와 '불화정'의 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의 발언들 중에 피고인의 무죄를 지지하는 지향가를 가진 발언의 비율은 평의시기에 걸쳐서 J-자의 단조형 추세(monotonic trend)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초기의견이 '유죄' 혹은 '불화정'인 소수파 배심원들의 발언 지향가가 평의를 하는 동안 서서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기는 하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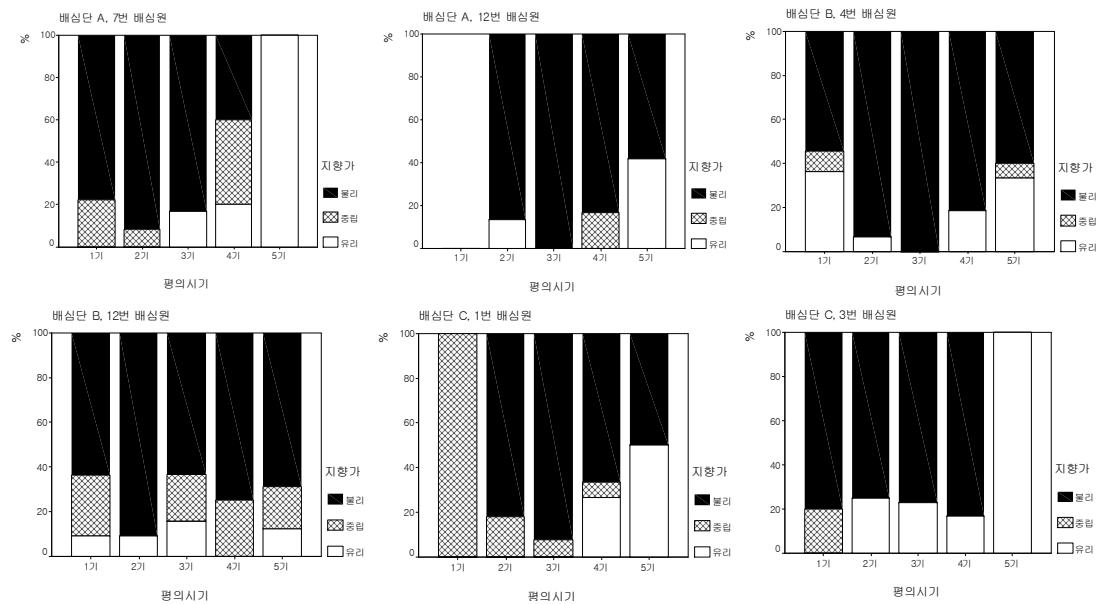


그림 3. 초기의견이 '유죄'인 배심원들 각각의 평의시기에 따른 발언 지향가의 비율분포

만, 평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유죄를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다는 사실이다. 앞서 설명한 BRD 기준은 유죄심증이 전혀 없어야 무죄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유죄심증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때는 무죄결정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따라서 초기의견이 '유죄' 혹은 '불확정'인 소수파 배심원들이 평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의 유죄를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다는 사실이 최종무죄평결에 대한 그들의 동의가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의견이 '유죄' 혹은 '불확정'인 소수파 배심원들이 합리적 의심에 의하여 최종평결에서 무죄결정에 동참한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평의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의견을 표명한 6명의 배심원들 각각의 발언 지향가 분포가 그림 3에 제시되었고, 초기의견이 '불확정'이었던 2명의 배심원들의 발언 지향가 분포가 그림 4에 제시되었다(초기의견이 '불확정'이었던 배심원들 중에서 한 명은 평의과정에서 평결주체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 지향가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평의초기에 '유죄' 의견을 표명하였던 6명 배심원들의 발언에서는 특히 평의의 마지-

막 시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지향가를 가진 발언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심단 A의 7번 배심원과 배심단 C의 3번 배심원의 경우에는, 평의 마지막 시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지향가를 가진 발언은 모두 사라졌다. 적어도 이들 두 배심원이 초기의견이 '무죄'였던 다수파 배심원들의 의견에 동의하여 최종평결을 한 것은 사회적 압력에 의한 단순한 동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배심단 B의 12번 배심원은 만장일치된 무죄평결에 동조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이 마지막 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종평결에서 실제 의견이 무죄의견으로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배심단 A의 12번, 배심단 B의 4번 그리고 배심단 C의 1번 배심원들의 경우에는 평의과정에서 확고한 무죄의견으로 바뀌지는 않았으나 평의의 마지막 시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이 40% 혹은 그 이상의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평의초기에 가졌던 유죄심증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되어 무죄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는 평의초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의 표명이 '불확정'이었던 배심원들의 평의 중 발언의 내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견이 불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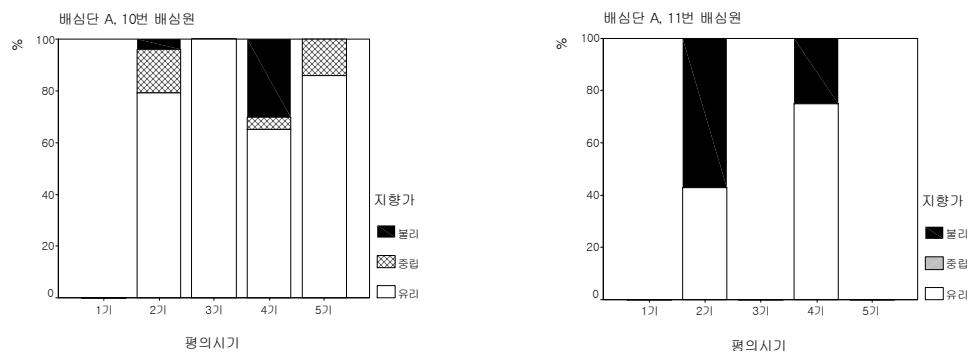


그림 4. 초기의견이 '불확정'인 배심원들 각각의 평의시기에 따른 발언 지향가의 비율분포

이었던 배심원들은 평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발언을 하였으나, 각 평의시기에서의 발언들 중 최소한 40% 이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향가를 가진 것들이었다. 따라서 초기의견이 '불확정'이었던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에서 무죄결정에 동의한 것이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유죄라는 판단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논 의

본 연구는 연령, 성별, 직업이 다양한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였고, 법원내의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역 법조인들이 역할을 맡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초로 실제 배심재판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이 연출된 모의배심재판에서 각 12인으로 구성된 세 배심단의 배심평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세 배심단은 공히 만장일치에 의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본 연구의 초점은 평의초기의 의견이 '유죄' 혹은 '불확정'이었던 배심원들이 최종평결에서 무죄의견에 동의한 것이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적 전향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앞서 초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심원이 자신의 소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동료배심원들로부터의 압력 혹은 친화동기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판단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면 배심제도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제기될 수 있다. 형사배심재판제도의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만약 한국의 배심원들이 배심평의 과정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단순한 동

조나 사회적 압력 또는 협상 메카니즘에 의하여 평결을 도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집단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실제 의견에 반하는 집단의견에 찬동하는 사회적 동조나 집단의견에 설득되어 자신의 판단을 내용적으로 바꾸는 인지적 전향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 및 개인의 사회적 정체감(identity)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집단을 내집단(in-group)으로 범주화할 때와 외집단(out-group)으로 범주화할 때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이 발생하는 양상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본인의 선호나 이의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선발되어 일회적으로 구성된 집단이므로 개인이 그 집단에 대하여 특정한 정체감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따라서 평의과정에서의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배심원의 사회적 정체감을 고려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배심원들은 평의초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개인의견을 표시하므로 그 의견에 따라서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범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심리적 역학 관계 맥락에서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을 정의하였다.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결과의 해석도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역학관계 맥락에서 그 근거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초기의견에 반하는 판단에 결국 동의하는 것이 사회적 동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적 전향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 연구

에서는 평의과정에서의 배심원 발언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혹은 중립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지향가로 구분하고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 발언의 지향가가 변화해가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발언지향가의 변화추세를 파악한 것은 평의과정에서 인지적 전향이나 사회적 동조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혹은 그것이 부침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배심재판의 배심평의과정 중에 배심원들 사이에서 사회적 동조나 인지적 전향이 한번, 두번 혹은 백번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무죄 혹은 유죄라고 판정하는 최종평결이 각 개인 배심원들의 합리적이고 진정한 판단인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적 관심은 초기에 유죄 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이 최종평결 당시에 무죄평결에 동의한 행동을 인지적 전향으로 볼 것인지 사회적 동조로 볼 것인지의 여부이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하여 발언지향가의 변화추세를 파악한 것이다.

초기의견이 ‘유죄’이거나 ‘불확정’이었던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무죄를 지지하는 지향자를 가진 배심원들의 비율이 첫 번째 평의시기에서는 10.7%였다가 마지막 평의시기(제5기)에서는 41.7%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반면 동일한 배심원들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지지하는 지향자를 가진 배심원들은 평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68.1%에서 50.0%로 감소하고, 중립적 지향자를 가진 배심원들은 8.2% 대에서 약간씩 증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지적 전향의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평의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견을 가졌던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의 발언들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들의 비율이 평의진행에 따라 J-자형 추세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은 전체적으로 인지적 전향에 의해 최종평결에서 무죄평결에 찬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의 발언들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들의 비율이 평의초기부터 증가하는 직선형 추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평의초기에는 빨리 증가하지 않다가 평의 중반에서부터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J-자형 추세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견을 가졌던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은 평의초기에는 여전히 유죄심증을

비교적 강하게 견지하고 있지만, 평의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초기다수파 배심원들의 설득적 논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유죄 심증에 합리적 의심이 형성되어 결국 무죄 의견으로 생각이 변해갔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평의초기에 다수의견이었던 무죄견해가 최종평결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것은 사회심리적인 동조 현상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형성되어 나타난 인지적 전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인지적 전향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앞서 초두에서 언급한 ‘정보적 동조’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조의 유형 중에서 정보적 동조는 개인과 집단이 소유한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자신의 본래 의견 및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행동적으로 자신의 견해와 상반되는 집단의 의견 및 판단에 찬동하는 사회적 동조와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정보적 동조는 분명한 의견이나 판단이 없는 개인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집단의 의견이나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지적 전향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배심원단의 경우에는 모든 배심원들이 처음 접하는 재판에서 똑같은 증거와 증언을 보고 들은 후 평의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이 소유한 정보와 집단이 소유한 정보가 양과 질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평의가 이루어지므로 배심평의과정에서 정보적 동조가 발생할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배심재판제도에서는 정보적 동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심원들이 각자의 직업이나 교육수준 등을 서로에게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판사가 평의에 참석하지 않고 순수하게 일반시민들로만 구성된 배심단의 평의에서 정보적 동조에 의하여 특정한 평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론적으로,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J-자형 변화추세)는 정보적 동조의 결과라기보다는 인지적 전향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의 발언 지향자를 개인적으로 보면, 사회적 동조에 의한 행위로 만장일치에 합의한 배심원이 적어도 한명(그림 6의 배심단 B, 12번 배심원)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결론의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의초기에 소수의견 (유죄)을 가졌던 배심원들의 평의참여가 특별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대부분은 소속 배심단에서 가장 발언을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개인배심원의 발언 지향률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도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의 대부분은 소극적인 사회적 동조에 의하여 만장일치된 무죄평결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BRD 기준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단에 의하여 만장일치 평결에 동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결과는 초기의견이 ‘무죄’였던 초기다수파 배심원들의 발언 지향률에서 발견되는 변화 양상이다. 그 배심원들은 당연히 평의초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였는데, 그 경향이 평의과정 중에 계속 유지되거나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U-자형의 흥미로운 양상으로 변화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초기의견이 ‘무죄’였던 초기다수파 배심원들은 평의초기와는 달리 평의의 중간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이 감소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발언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초기다수파 배심원들이 소수파 배심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맹목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우선 소수파 배심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자신들의 의견과 비교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즉, 평균적인 지적 역량을 가지고 사법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일반시민의 판단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잣대로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는가?” 혹은 “자신의 견해와 상반되는 증거들도 진지하게 고려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모의배심재판에 참여한 한국의 일반시민들은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시사한다.

집단의 판단과 의사결정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사회적 영향력 중에는 다수파(majority)의 영향력과 소수파(minority)의 영향력이 있다. Moscovici(1980)는 사회적 영향력이 항상 다수파에서만 나온다면 사회적 변화나 개혁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소수파의 영향력을 탐구하였다. Moscovici의 전향이론(conversion theory)에 의하면 다수파에 대한 공공연한 동의는 진정한 개인적 태도변화인 경우보다는 집단 내에서의 조롱이나 치별을 피하려는 욕구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인간은

다수파가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너무나 집중하는 나머지 다수파가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나 이유를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Mugny & Perez, 1991). 반면에 소수파는 훨씬 더 힘이 약하지만 때때로 창의적이고, 비범하며 도발적이다. 더구나 다수파의 관점에 반대할 때 소수파는 용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소수파는 매우 혁신적이고 혁신적이며 진지하다. 이런 특질들 때문에 소수파가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때 사람들은 그 견해의 근거와 논리를 더 주의 깊게 경청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이 상황에서 소수파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실제로 훌륭한 근거를 가지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소수파의 영향력에 반응하여 신념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쉽다. 이 과정이 바로 Moscovici가 전향이라고 명명한 과정이다. 전향은 사회적 영향력이 내면화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향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배심단들의 평의에서 초기의견이 소수파였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를 도출해야한다는 집단목표(group goal)에 집중하기보다는 정확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과업목표(task goal)에 집중하여 평의를 진행하였고, 따라서 혁신적이며 진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진지하고도 혁신적인 발언과 주장에 의해 초기다수파 배심원들이 전향되지 않은 것은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전향이 발생하는 조건인 소수파들의 ‘훌륭한 근거’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한국 배심원들의 평의자료에서 초기다수파 배심원들의 발언들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의 비율이 평의과정에서 U-자형의 변화추세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러한 다수파의 개방성과 수용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수파 배심원들의 초기견 해대로 무죄라는 최종평결이 만장일치로 내려진 것은 다수파의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파 배심원들의 판단근거가 검증을 견디어 내지 못하였으며, 다수파의 근거가 논리적 우월성을 가졌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배심평의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소수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에 합의한 것은 평의과정 동안 판단의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다수파 배심원들의 우월한 주장과 근거에 동의하게 된 합리적 집단판단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미에서 이루어진 모의배심원 연구들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무죄평결이 유죄평결보다 방어 혹은 정당화하기 쉽다”는 멘탈모델 혹은 집합적 표상을 지니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표상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평결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다수나 소수가 유죄를 주장하는 경우보다 최종 평결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Davis, 1980; MacCoun & Kerr, 1988; Tindale et al., 1990; Tindale & Davis, 1983). 이러한 관점은 배심원들이 평결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 관리(행동의 정당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 평의 초기에 소수의견(유죄)을 가졌던 배심원들이 다양한 주장과 관점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최종평결에서 자신의 초기의견을 바꾸어 무죄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무죄평결이 방어하기 쉽다는 선입견 혹은 전제에 의하여 최종평결에서 무죄의견을 표명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미의 국가들에서는 배심재판의 역사가 길고 국민들이 그 제도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고, “무죄평결이 유죄평결보다 방어하기 쉽다”는 멘탈모델 혹은 집합적 표상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모의배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그러한 집합적 표상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희귀하므로 만약 한국국민들에게 재판에 대한 어떤 집합적 표상이 있다면 “유죄평결이 무죄평결보다 방어하기 쉽다”는 멘탈모델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또한 재판의 결과나 내용이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한국의 폐쇄적인 사법제도 현실 속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장일치에 의한 무죄평결)가 무죄평결이 방어하기 쉽다는 멘탈모델 혹은 집합적 표상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기초가 된 모의배심재판은 판결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피고인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실제의 배심재판과 동일하였다. 그러한 모의재판의 배심평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모의배심원들이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어진 과업을 매우 진지하게 수행하였고, 각기 다른 견해에 대하여 개방적이었으며, 소신과 양심에 충실했고, 법원칙(BRD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어진 과업을 진지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은 평의의 거의 대부분이 평결주제와 절차주제를 토의하는데 집중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되었고, 각기 다른 견해에 대하여 개방적이었다는 것은 평의초기에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던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진지하게 고려하였다는 증거(피고인에게 유리한 벌언의 U-자형 변화추세)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소신과 양심에 충실했다는 것은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이 사회적 동조가 아니라 인지적 전향에 의하여 만장일치에 동의한 것이라는 증거(피고인에게 유리한 벌언의 J-자형 변화추세)에 의해 확인되었고, 법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역시 평의초기에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던 초기소수파 배심원들이 최종평결 당시에 피고인이 무죄라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심증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의해 무죄판단으로 전향하였다는 증거(그림 2의 평의시기 제5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벌언의 비율 참조)에 의해 확인되었다. 한국 배심원들의 그러한 진지성, 개방성, 소신과 양심에 대한 충실했고, 그리고 법원칙의 적용능력이 판결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피고인의 운명이 좌우되는 실제 배심재판에서도 발휘될 것인가? 타인의 운명이 좌우되는 실제 배심재판에서 한국의 배심원들이 본 연구에서 보여준 것보다 경솔하고, 폐쇄적이며, 협상경향성을 보이고, 법원칙을 도외시할 것으로 예상할만한 이유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에 실시될 실제 배심재판에서의 한국 배심원들의 역할과 능력에 대하여 매우 희망적인 예측을 가능케 한다.

## 결 론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제도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사회이념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사법제도에 실질적인 과학성을 구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배심재판제도의 핵심은 국가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판사가 수사하고 조사하여 추정한 진실에 대해 그 사실여부를 평균적인 지적 능력

을 가진 일반국민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배심재판제도의 의의는 국가(구체적으로는 검사와 판사)에 의해 추정된 실체적 진실이 평균적인 지적 역량을 가진 보편적인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단순 명료하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제시하는 증거 및 증언을 청취한 후, 관련법에 대한 판사의 설시에 기초하여 평의를 하고, 형사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는 일반시민들의 판단은 상식적인 혹은 보편적인 합리성을 충족하는 한, “잘했다-못했다”, “맞았다-틀렸다” 등의 전문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이 정확히 규명되었는가, 실체법이 잘 적용되었는가, 법의 형평성이 구현되었는가, 피고인의 인권이 보호되었는가, 사법부의 정책이 잘 구현되었는가, 등의 고도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잣대들은 법전문가들의 판단과 행동, 그리고 제도와 절차의 정교성과 합리성을 평가하는 잣대들이지만, 그러한 잣대들을 사법에 참여하는 일반시민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검사와 판사를 흉내 내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요구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지적 역량을 가지고 사법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일반시민의 판단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는 무엇일까? 그 잣대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일반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표출하는가?”, “증거와 법에 대한 검토와 토의가 심층적이고 적극적인가?”, “판단이 미숙한 상태에서 협상 메커니즘을 통하여 평결이 종결되어버리지 않는가?”, “판결법주(무죄 혹은 유죄)가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이해가 짜 맞춰지지 않는가?”, “자신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져보려는 노력이 있는가?”, “자신의 견해와 상반되는 증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가?” 등의 잣대를 의미한다. 즉, 사법에 참여하는 국민의 판단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는 평균적인 지적 능력과 보편적인 일반인의 생활경험 즉, 소위 사회통념(socially accepted idea, community standard)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가?”이다.

“배심원 개개인들이 소신과 양심에 의해 판단하였는가?” 혹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된 결정이 진정으로 배심원 개개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가?”도 또한 형사배심재판에서 사회통념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들이다. 본 연구는 그 잣대를 이용하여 한국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평의과정을 거쳐서 사실인정의 어려운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국민들이 모의재판이 아닌 실제 배심재판에서 보편적인 사회통념을 언제나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한 결론을 위해서는 향후에 많은 모의재판과 실험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2007년부터 시행될 실제 배심재판의 자료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정한 가설에 기초하지 않고 설계된 모의배심재판에서 도출된 객관적인 자료(발언)만을 이용하여 만장일치가 이루어진 이유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였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판단에 대한 배심원들의 주관적 확신도 및 공판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증거들에 대한 지각된 타당성 등의 주관적 자료가 함께 분석되어 만장일치에 내재된 심리적 기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배심재판제도에 대하여 향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연구들을 위해서 발언 지향가의 분석이 배심단이나 배심원 개인의 판단 과정의 내용과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한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박광배 (인쇄 중). 범주변인분석. 서울 : 학지사.
- 사법개혁위원회 (2004).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서울 : 대법원.
- Alvaro, E. M., & Crano, W. D. (1997). Indirect minority influence : evidence for leniency in source evaluation and counterargum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5, 949-964.
- Arce, R., Tortosa, F., & Alfaro, E. (2004). Verdicts and deliberation content analysis of judges and juries in the Spanish legal context. *Psychology in Spain*, 8, 1, 28-38.
- Bakhtin, M. M. (1981). Discourse in the novel. In M. Holquist(Ed.), *The Dialogic Imagination : Four Essays by M. M. Bakhtin*. (C. Emerson & M.

- Holquist, Trans.).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 Bakhtin, M. M. (1986).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V. McGee, Trans.).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 Baron, R. S., & Kerr, N. L. (2003). *Group Process, Group Decision, Group Action*.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 Deutsch, M., & Gerard, H. B. (1955).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 upon individual judg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6.
- Fleiss, J. L. (1981). *Statistical Methods for Rates and Proportions*. (Second Edi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 Hannaford-Agor, P. L., Hans, V., Mott, N. L., & Munsterman, G. T. (2003). Evaluation of hung juries in Bronx County, New York,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Maricopa County, Arizona, and Washington, DC. 200-2001(Computer file). ICPSR version. Williamsberg, VA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producer), 2003. Ann Arbor, MI :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distributor), 2003.
- Heuer, L., & Penrod, S. (1985). A field experiment on improving jury communication. *Report to the Wisconsin Judicial Council's Committee on Improving Jury Instructions*.
- Hoffman, L. R., & Kleinman, G. B. (1994). Individual and group problem solving : The valence model redressed.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1, 36-59.
- Holquist, M. (1990). *Dialogism : Bakhtin and His World*. New York : Routledge.
- Jury Research Institute. (2001). Jury deliberations : What goes on behind closed doors. Retrieved November 25, 2001, from <http://www.jri-inc.com/jury.htm>.
- Kaplan, M. F. (1987). The influencing process in group decision making. In C. Hendrick(ed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Volume 8. Group Processes*. Beverly Hills, CA : Sage.
- Kaplan, M. F. (1989). Task, situational, and personal determinants of influence processes in group decision making. In E. J. Lawler & B. Markovsky(eds.), *Advances in Group Processes*, 6, 87-105. Greenwich, CT : JAI.
- Kessler, J. (1973). An empirical study of six- and twelve-member jury decision-making processes.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6, 712-734.
- Landis, J.,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 159-174.
- Martin, R., & Hewstone, M. (2001).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ognitive processes in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 In J. P. Forgas and K. D. Williams(eds.), *Social Influence : Direct and Indirect Processes*. The Sydney Symposium of Social Psychology. Philadelphia, PA : Psychology Press/Taylor & Francis.
- Moscovici, S. (1980). Toward a theory of conversion behavior. In L. Berkowitz(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3. New York : Academic Press.
- Moscovici, S., & Lage, E. (1976). Studies in social influence : III. Majority vs. minority influence in a group.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 149-174.
- Moscovici, S., Mucci-Faina, A., & Maass, A. (1994, eds.). *Minority Influence*. Chicago, IL : Nelson Hall.
- Mugny, G., & Perez, J. A. (1991). *The Social Psychology of Minority Group Influenc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meth, C. J., & Kwan, J. (1987). Minority influence, divergent thinking and detection of correct solu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786-797.
- Peterson, R. S., & Nemeth, C. J. (1996). Focus versus flexibility :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 can both

- improve perform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 14-23.
- Sherif, M. (1936). *The Psychology of Social Norms*. New York : Harper & Row.
- Tanford, J. A. (1990). The law and psychology of jury instructions. *Nebraska Law Review*, 69, 71-111.
- Tanford, S., & Penrod, S. (1990). Las deliberaciones del Jurado : Contenido de la discusión y procesos de influencia en la toma de decisiones de un Jurado. *Estudios de Psicología*, 42, 75-97.



## **Social Conformity and Cognitive Conversion During Jury Deliberations : A Content Analysis of Deliberation Arguments in the First Officially Simulated Jury Trial in Korea**

**Kwang B. Par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angjoon Kim**

Ministry of Court Administration, Supreme Court

**Eunlo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yesun Seo**

Chung-Ang Univers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ganized and conducted the first official simulated jury trial in Korea at the 26th of August in 2004. One official jury and two shadow juries convened in the mock trial. In spite of split initial votes at the beginning of the deliberation, all three juries reached unanimous verdict of acquittal("Not Guilty") after deliberation. Majorities at the initial vote ultimately prevailed in all of the first Korean official mock juries.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he unanimous verdicts were reached because the minorities at the initial vote capitulated to social pressure or because they acquired reasonable doubt about the guilt of the defendant by the convincing arguments of the majorities. To determine whether the verdict was a true reflection of each individual juror's choice, temporal shifts in the valences of utterances during deliberation were examined. For the jurors with the "Not Guilty" pre-deliberation opinion, the percentage of utterances with positive valence(supportive for the defendant's innocence) showed a clear *U*-shaped trend as the deliberations progressed. This pattern of changes in utterance valences indicates that the jurors who had the "Not Guilty" pre-deliberation opinion exerted some efforts to consider alternative perspectives and arguments in the first half of the deliberation. But they were convinced later that the alternative perspectives were not persuasive. For the jurors with the "Guilty" and "Unsure" pre-deliberation opinion, the percentage of utterances with positive valence showed a clear *J*-shaped trend pattern as the deliberations progressed. This pattern of changes in utterance valence among the jurors who were the minorities in pre-deliberation opinion suggests that, throughout the

deliberation, they became gradually influenced by the arguments opposing to their own initial position. In conclusion, it was argued that the unanimous verdicts of the Korean mock jurors were reached not because the minorities at the initial vote capitulated to social pressure, but because they acquired reasonable doubt about the guilt of the defendant by the convincing arguments of the majorities.

**Key word :** Simulated trial, Jury, Deliberation, Social conformity, Cognitive conversion, Valence of utterance, Content analysis.



원고접수 : 2005년 5월 27일  
심사통과 : 2005년 7월 4일